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2-001호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⑦ 참 가 인	
⑧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2. 2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부존재)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⑨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2. 4. 29.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제2022-001호,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토지 소유자 이○○와 공모하여 청구인의 이주보상금인 ○○원을 횡령했다 주장하며 2021. 12. 16. 피청구인에게 ○○시 공금계좌에서 2020. 12. 23.에 862건 지급명령을 처리한 계좌의 거래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1. 12. 23.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지급명령을 처리한 기관은 NH농협은행 ○○시청출장소로 ○○시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12. 23.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부존재) 처분을 취소하라.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 구 인

1)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동 ○○번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임차인(청구인)의 이주보상금으로 ○○원을 책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이○○)와 공모하여 이○○ 농협은행 000-0000-0000-00으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2020. 12. 23. 16:35경 농협을 가지 않고 직접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계좌(000-00-000000)에서 직접 이○○에게 ○

○원을 이체하였고 16분 후 농협은행 ○○시청 출장소에 의뢰하여 다시 이 ○○ 농협은행 000-0000-0000-00으로 입금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20. 12. 23. 862건 지급명령 처리한 계좌의 거래내역 정보 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였으며, 금고 주인인 피청구인이 농협에게 자료를 받아서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1) “○○동 ○○번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임차인(청구인)의 이주보상금으로 ○○원을 책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4항에서 “매수가격 및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되어있으나 보상 항목이나 매수청구대상에 관한 사항까지 준용될 수 없는 점,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의 비고란에 의하면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한하며,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주보상금 같은 간접비는 이 사건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의 이주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이○○에게 입금 후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농협은행 ○○시청출장소의 질의 회신 문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동일 건에 대한 예금거래 시간 차이는 업무처리 절차에서 은행 담당자가 승인(출금)한 시간과, 최종 책임자가 승인한 시간(입금)의 차이로 청구인의 주장은 농협 업무절차에 대한 오해이다.

② 청구인은 농협은행 ○○시청출장소의 질의회신문서에 대하여 “횡령한

공무원이 농협직원을 매수하여 허위문서를 받아냈다”며 이 사건과 관련 피 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 후 각하 결정되었으나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여 광주지방법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각하결정된 바 있다.

3) “2020. 12. 23. 862건 지급명령 처리한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 청구인이 농협에게 자료를 받아서라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을 제4호증에서 보여지듯 총 862건의 지급명령을 처리한 기관은 NH농협은행 ○○시청출장소이다. NH농협은행 ○○시청출장소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의해 ○○시청 제1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시청 소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대한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0. 12. 23. 지급명령 처리한 862건은 ○○시 회계를 총망라해서 처리된 것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에서 지급 요청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시 △△과 소관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금고 주인도 아니다.

4)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자료는 ○○시 △△과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 부존재”이지 “정보공개 거부”라 할 수 없다.

[보충서면]

5) 2020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제6호증)을 보면 지출한 총 세출액이 ○○원으로 ○○원을 2회 입금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1. 12.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020. 12. 23. ○○시 공금계좌에서 862건 지급명령 처리한 계좌의 거래내역서 공개 청구합니다. △△과 최○○ 주장에 의하면 2020 장기미집행토지보상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되는 공금 예금계좌에서 2020. 12. 23. 862건 지급명령 처리하였다고 하는 바, 투명하게 862건 지급명령 처리된 거래 내역서를 공개청구합니다. 청구인의 이주보상금 ○○원을 △△과 공무원이 이○○ 농협 352-****-****-**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서 이○○ 농협 352-****-****-** 으로 지급된 게 없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2021. 12. 23.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존재’ 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귀하께서 정보공개 요청한 “○○시 공금계좌에서 862건 지급명령 처리한 계좌의 거래내역서”는 민사소송 2021○소○○○○○에서 을나 제6호증으로 제출한 금융거래 관련 질의서에 대한 회신서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을나 제6호증에서 보여지듯 총862건의 지급명령을 처리한 기관은 NH농협은행 ○○시청 출장소로, 요구하신 자료는 ○○시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3. NH농협은행 ○○시지부(○○시청출장소)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의하여 ○○시청 제1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시청 소관 회계 및 기금 등에 대한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0. 12. 23. 지급명령 처리한 862건은 ○○시 회계를 총망라해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2020. 12. 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지출처리한 건은 ○○동 ○○번지 토지 및 건물보상금과 소유권이전수수료 지급 2건입니다. ○○시 △△과에서는 이주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대상 자체가 아님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끝.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 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참조).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초자료를 검색·수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

조).” 라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 관계 법령과 판례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요구한 ‘거래 내역서’ 자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재정계획·예산 편성·지출·결산 등 재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하 ‘e호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추출·취합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e호조 시스템에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이 피청구인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 점,

④ 피청구인은 “○○시 △△과”가 아니라 “○○시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시 △△과”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